

# 조두순과 레바하 - 출소 전후 조두순의 신상공개 문제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

## 들어가며

관점이 사회를 바꾼다. 조두순이 출소하자 온 사회가 뜨겁다. 이미 출소 이전부터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언론에서의 집중적인 조명과 관심에서 비롯되었음은 분명한 일이다. 특정 종편 채널에서는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식 보도를 연이어 방송한 바 있다. 더군다나 12월 12일 출소 새벽부터 그 이후까지 유튜브들의 과도한 경쟁방송과 사적 보복이나 응징을 예고하는 방식의 분노 표출이 일반 국민들의 감정과는 다소 동떨어진 행태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언론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에는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과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단죄의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지난 1983년 19세의 한 여성을 납치,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

고, 1995년 12월에는 같이 술을 마시던 60대 노인을 심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역시 2년을 복역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조두순은 2008년 12월에 당시 8살에 불과한 여아 나영(가명)이를 안산의 한 교회 내 화장실에서 천인공노할 강간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2009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유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주취감정' 사유였다. 이에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역을 마치고 2020년 12월 12일 만기출소하게 되었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나 그 대상 및 구체적인 범행방식 등을 살펴보면, 차마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악마적 범행 방식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는 사실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 이를 견디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당연히 국가와 사회, 그리고 언론의 입장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많은 관심과 주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더구나 그가 출소 후 거주할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의 지역사회로서는 그의 출소 후 있을지 모를 재범 가능성으로부터의 안전문제 등은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영역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문제점, 입법대응 등을 다루는 보도들이 이를 대변하듯 폭증하고 있다. 특히 행형적 관점이나 사회적 안전의 관점을 벗어나 조두순이라는 개인적 인물 중심의 시각에서, 즉 개인의 과거 행적 및 성격 분석, 가정사 등 한 인물의 인격적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성범죄자 출소문제에 접근하는 다큐멘터리식 보도 역시 자극적인 제목을 지닌 채 연이어 방송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얼굴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그의 과거 사진을 누구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는 당연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국가가 담당해야 할 행형적 관리나 보안처분의 방식과 달리 사회영역의 대표적 대변자로서 언론이 이 사안을 다루는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회영역이 담당해야 할, 특히 언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무엇보다 현대 국가 공동체의 관점에서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범죄자의 출소 관련 보도가 가져올 수 있는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문제 관련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며 이러한 문제를 다룬 언론계의 미디어비평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현실이다. 아울러 범죄자의 출소 전후의 인격권 문제를 직접 다룬 상급심 법원의 판례 역시 찾아보기 어려워 언론 보도의 경우 관련 법리나 원칙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1973년에 선고된 일명 '레바하 판결'을 통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고민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깊은 숙고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조두순을 바라보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잠시 멈추고 독일 사회에서는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도 문제에 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차분한 입장에서 담담하되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필자의 어설픈 식견을 밝히기보다는 당시 레바하 사건을 다룬 재판부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하는 데 전념하고자 한다.

## 레바하에서의 군인살해 사건

레바하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자를란트 주의 도시이며 인구는 채 20만이 되지 못한 곳이다. 이곳에서 1969년 두 명의 젊은이가 연방군의 탄약저장고를 지키는 군인 초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잠자던 4명의 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른 한 사람을 심하게 상해한 뒤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였다. 또 다른 제3의 범인 A는 이들과 초소습격을 공모한 공범이었지만 습격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동성애적 생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들의 범죄 동기는 무기탈취를 통해 금융중개인을 협박한 뒤 마련한 자금으로 자신들이 꿈꾸었던 남태평양 한 바다 위의 요트 생활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즉 사회로부터 단절된 생활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범행을 실행한 두 명의 범죄자는 종신형에 처해졌고, 권총의 사용법을 설명해 주고 금융중개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범죄계획 및 과정에 가담한 제3의 당사자 A는 중범으로 인해 6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형량 산정에서 A는 초범이었던 점, 범죄 감행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 가담자였다는 점, 범행 이후 무기 은신처의 자백 및 범행 규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 범행에 대한 적극적 반성 그리고 과거 그의 인격상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억압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비이성적이며 감정 편향적으로 주범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다는 점 등이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이후 A는 그의 형기 중 4년을 복역했고, 형집행정지처분에 따라 출소가 예정되었으며,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레바하의 군인살해 사건은 독일 국민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범죄행위를 둘러싼 수사 과정과 소송 과정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으며 ZDF의 다큐멘터리극 제작 부서장인 위르겐 네벤-두몬트와 연방범죄청 범죄담당관 카를 슈즈는 확정 판결 직전에 레바하 사건에 관한 책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네벤-두몬트와 쇤라인은 ZDF의 다큐멘터리극 시나리오 ‘레바하의 군인 살해’를 작성한 뒤, 쇤라인 감독 하에 1972년 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 다큐멘터리극은 금요일 저녁 2부작으로 2시간 40분 동안 방영될 계획이었고,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출소를 앞둔 A의 친구 관계, 습격계획 및 실행과정이 다뤄졌다.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은 A의 사진이 공개되었고, 그 다음에는 대역배우를 통해 그의 행동이 재연되었으며 이름은 반복적으로 언급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ZDF의 다큐멘터리극은 자신의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의 얼굴이나 모습 또는 이름이 공개되는 한, 해당 방송물의 방영을 금지해 줄 것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요구했지만 지방법원과 상급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에 A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973년 6월 5일자 판결(1 BvR 536/72)).<sup>1)</sup>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범죄 보도, 특히 출소를 앞둔 범죄자의 인격



권 문제에 관해 기념비적 원칙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이 판결은 범익형량의 구체적 실행방식으로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판결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판결의 쟁점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인격권과 언론자유 의 긴장 상태 및 그 해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우선 이 문제를 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의 존엄성) 및 제2조 제1항(일반적 인격권)에서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기본법 제5조(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에서 보장된 보도의 자유 사이의 긴장 상태로 보았다. 우선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격권의 구성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NJW 1973, 1226, 1227.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권은 모든 개개인에게 사적 생활형성의 자율적 영역을 보장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인격권의 범위에는 홀로 있을 권리, 자기 자신에 속할 권리, 타인의 침입과 개입을 배제할 권리 역시 포함된다. 이것은 아울러 초상권과 음성권, 자신의 인물의 묘사에 관한 처분권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활상 혹은 그의 생활 과정들을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sup>2)</sup>

따라서 범죄의 계획, 실행, 소추에 관한 텔레비전 방송은 만약 해당 프로그램에서 실명이 공개되고 초상 및 식별 가능한 인적 사항이 공표된다면 이는 기본법 제1조 등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 및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구체적인 사례의 법익형량에 따라 행해진 공적 이익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인격에 대해 우위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조사되어야 하며 사적 영역으로의 침해방식이나 사정거리가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적절한 비례관계에 서 있는지 측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sup>3)</sup>

2) NJW 1973, 1226, 1229.

3) NJW 1973, 1226, 1229.

또한 이러한 충돌의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적 의지에 따르면, 두 헌법적 가치가 기본법상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그것들 중 어떠한 것에도 원칙적 우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sup>4)</sup>

이러한 기본법의 인간상과 상응하는 공동체 형성은 개인적 인격권의 독자성의 인정과 마찬가지로 현재에 자유로운 의사소통 없이는 생각될 수 없는 자유로운 생활 분위기의 확보를 요구한다. 두 헌법적 가치는 따라서 가능성에 따라 충돌이 조정되어야 한다.<sup>5)</sup>

## 2. 범죄보도에 대한 공중의 정보이익과 적절한 보도 시점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범죄행위에 관한 방송보도에 대하여 반대편에 해당하는 공중의 정보이익에 대한 중요성을 마찬가지로 강조하였다. 즉 범죄자의 인물을 포함하는 범죄사건 발생에서 그것의 진행에 이르렀던 경과 역시 공중의 정보이익에 해당하며, 이러한 이익 속에는 당연히 범죄자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의 전달은 중요한 언론의 임무로서 '시사적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범죄행위의 반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예방할 노력이 범죄행위와 행위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에 관해 인정될 수 있는 정보이익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범죄행위는 침해대상, 범행 방식 혹은 통상적 범죄성을 넘어서는 결과의 심각성을 통해 부각된다. ... 심각한 폭력범죄에 있어서는 따라서 일반적 호기심과 선정성 외에도 진지한 정보이익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범죄행위자이며, 어떤 동기를 가졌으며, 그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그리고 동종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였는지에 관한 정보이익이 존재한다. 이때 우선은 순수한 범행사실에 관해 인식하는 욕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범죄행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석, 그것의 배경과 사회적 전제조건이 중요성을 얻게 된다. 특히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가와 형사 당국의 통제에 대한 정당한 민주적 요청이 형사소추기관과 형사법원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텔레비전 방송은 바로 자신의 영향력으로 인해 특히 요구되는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다는 점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sup>6)</sup>

4) NJW 1973, 1226, 1229.

5) NJW 1973, 1226, 1229.

6) NJW 1973, 1226, 1231.

연방헌법재판소는 다른 한편 이러한 두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범죄보도가 가지는 사회적 차원의 순기능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방송이 가지는 현대 사회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이 이러한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중대한 범죄에 관한 최근의 시사적 보도는 범죄자의 실명이나 초상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 역시 포함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한 생활이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에 서 있고, 범죄의 동기해명 및 동기의 전제를 해명하는데 기여한다면, 범죄자의 죄책의 정당한 평가를 위해 현대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경계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정의 고려 하에서만 결정될 수 있으며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물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낙인찍기 효과 관점과 방송이 가지는 독점적 지위 및 기술적·재정적 가능성에 따라 나오는 사회의 권력적 지위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부과된다고 인정했다.<sup>7)</sup>

이러한 관점 하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범죄자에 대한 인격 침해적 보도를 통해 시기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해당 범죄인물과 그의 사적 영역을 다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대한 범죄를 통해 공중의 주목 내로 편입되고 사회적 동료인 국민 개개인의 기대감을 저버린 범죄자 역시 사회 구성체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상 인격적 보호청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추 및 형사상 유죄판결과 함께 공중의 관심을 야기한 행위에 관한 정보가 공동체의 정당한 경험과 반응을 통해 충분히 대중들에게 제공된 이후, 이를 넘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자의 인격 영역으로의 침입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 사회적 제재라고 판단했다.<sup>8)</sup>

나아가 허용되는 범죄 시사보도 및 그 이후 보도나 논의의 필요성에 관한 시기적 경계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시사적 보도와 허용되지 않는 나중의 보도 사이의 시기적 경계점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이 지난 후 혹은 몇 년이 지난 후 등 일률적인 확정 기간을 통해 고정될 수는 없다. 이것의 결정적 기준은 해당 보도가 시사적 정보에 비해 행위자의 현저하고도 새로운 침해를 야기하기에 적당인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최종심의 유죄 확정판결의 선고나 확정판결의 시점이 어떠한 특정한 경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사적 정보이익은 범죄행위의 표현, 그것의 발생원인 그리고 사정에 따라 완전한 소송종결 아울러 또 다른 추후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의 배경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어쨌든 형사소송의 종결 이후 즉시 혹은 시기상의 직접적 관련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sup>9)</sup>

7) NJW 1973, 1226, 1231.

8) NJW 1973, 1226, 1231.

9) NJW 1973, 1226, 1231.



### 3. 범죄자의 재사회화 이익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제 최종 결론의 도출을 위한 결정적 지향점으로 범죄자의 사회로의 복귀 이익이라는 새로운 인격권 관점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러한 재사회화 이익은 철저히 독일 행형법이 그간 관철해 왔던 징역형 집행의 강조된 목표에서 도출된다. 그에 따르면 죄수에게는 책임 있는 생활 수행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매개되어야 하고, 그는 복귀 후 자유로운 사회의 조건 하에서 법적 위반 없이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그러한 기회를 인식하며 그러한 위험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sup>10)</sup>

이러한 구상은 연방정부의 형사집행법 제2조 “징역형의 집행에서 죄수는 장래에 사회적 책임 하에서 범죄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설정에서 명확히 인정되는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형집행의 목표 하에서만 재사회화를 위한 토대가 조성될 수 있으며 그 결정적인 단계는 석방과 함께 시작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처벌 당사자만이 자유로운 인간공동체로의 귀환을 준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회공동체 스스로 그를 수용할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누리는 기본권 주체로서 범죄자 역시 이러한 복역 이후 공동체로 편입될 기회를 얻는 재사회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

<sup>10)</sup> NJW 1973, 1226, 1231.

한 재사회화는 사회공동체 관점에서도 범죄자가 다시 재범이 되지 않고 새로이 시민이나 공동체에 해를 입히지 않는 공동체 그 자체의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sup>11)</sup>

#### 4. 재사회화 수행방식

이러한 재사회화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석방 이후 형벌 없이도 인생을 수행할 수 있는 내적 전제조건을 국가가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범죄치료적 조치는 징역형의 범죄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고도로 불안해지고, 자기불안정적 혹은 심리적으로 항시 고통 받고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재사회화는 범죄인이 그의 석방 이후에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위한 외적 전제조건이 마련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으며, 국가의 적절한 도움 외에도 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sup>12)</sup>

한편, 대개 그러한 성공은 범죄 치료적인 조치가 필수불가결함에도 주변의 석방자에 대한 무시와 거부감이 그를 좌절하게 만들며, 그러한 고립화는 새로운 시작에 관한 불안정한 심리를 증폭시키고 용기를 박탈시킴으로써 결국에는 다시 그의 범죄성에 이르게 했던 경로로 되돌리게 된다고 판단했다.<sup>13)</sup>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독일 언론평의회 역시 1971년 9월 28일 연방대통령에게 조언한 범죄자 석방에 관한 강령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는 형벌수형자의 재사회화 이익을 고려하여, 범죄자 개인의 이름이나 자세한 참고사항, 즉 석방된 죄수, 그의 가족 혹은 석방지역을 추론할 수 있는 사항을 공표해서는 안된다.<sup>14)</sup>

#### 5. 판결의 결론

이러한 논의 끝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격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관한 보도이익은 모든 언론에서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의 발견 직후, 수사과정과 무엇보다 형사절차 진행 중에만 만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더 이상 형사절차와의 시간적 맥락 없이 존재하는 다큐멘터리극에서의 신상공개를 포함한 방송내용들은 하나의 새로운 인격권 침해로 작용한다고 인정했다.

11) NJW 1973, 1226, 1231.

12) NJW 1973, 1226, 1232.

13) NJW 1973, 1226, 1232.

14) NJW 1973, 1226, 1232.

아울러 ZDF의 다큐멘터리극이 방송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여론형성의 우월한 이익, 즉 ZDF에 의해 부각된 국민들의 형사소추의 실효성에 관한 의심들 그리고 연방방위군에 내려진 안전조치 등의 문제들 역시 당사자의 신상공개 없이도 수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송내용은 A의 재사회화를 위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정도로 당사자를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sup>15)</sup>

## 나가며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그에 대한 공분으로 인해 자칫 필자의 논의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눈치 없고 비현실적인 원칙주의자의 대변으로 비취질 것이 두렵기는 하다. 하지만 근대 이후의 헌법 및 형법상 원칙은 개인의 자의적 탄핵주의를 부정한다. 무엇보다 국가적 형벌을 마친 이후 성범죄자 및 흉악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 및 적절 조치는 우선 국가의 몫이 되어야 하며, 사적 응징이나 보복은 자제되어야 한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국가기관의 통계결과가 무시될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가의 책무와 달리 언론을 비롯한 사회영역은 국가의 처리 과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방향에 집중되어야 한다. 특히나 지금의 우리 사회의 조두순을 바라보는 관점, 흉악 범죄자의 격리와 차폐방식에만 몰두하는 비인권적 재범방지 조치의 논의에만 집중하는 우리 현실은 민주적, 아울러 사회적 헌법국가를 실현해 나가하고자 하는 헌법의 구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또한 조두순의 개인적 인물에 관한 단죄방식의 관심과 보도는 자칫 우리 헌법상 최고의 가치기준과 해석기준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민주주의 헌법국가는 ‘다양성’, ‘관용’, ‘열린 사고방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마지막 존재의식의 인정문제이다. 그리고 헌법 보장을 통해 이를 지켜나가하고자 하는 소수자 보호와 관용의 문제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모든 개별적 기본권의 정점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헌법은 ‘누구든지’라는 전인칭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헌법상 기본권은 예외적으로 조두순과 같은 악인적 범죄자에게는 보호를 거둔다는 관점을 거부한다. 오히려 민주적 헌정국가의 인간 존엄성 가치는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에게 남겨진 가장 협소한 영역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지켜주려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역의 보호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쏟아질 조두순 관련 언론보도에서 지켜져야 할 최후의 가장 협소한 영역에서만큼은 ‘누구나의 존엄성’이 지켜지길 기대해 본다. ☸

15) NJW 1973, 1226, 1233.